

위원선임 및 개선(안)

□위원선임

소 속	의 원 명	선 임 사 항
새정치국민회의	정 현 균	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
	구 철 회	
한 나 라 당	장 진 국	

□위원개선

소 속	의 원 명	선 임 사 항
한나라당	이 성 구	행정자치위원회 위원 →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
	이 철 호	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→행정자치위원회 위원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
1998. 10. 13
운영위원장

I. 주문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.

II. 관계규정

○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

○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III.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

'98.11.21(토)~11.30(월) 10일간

IV.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

1.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운영 13130-91('98.10.7)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
2. 기본계획 채택

가.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

나.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
번호 108

발의년월일:1998년 10월 12일
발 의 자:이용부의원 외 11인

1. 주 문

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
- 서울특별시의회회규칙 제70조

서울특별시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출석요구일 : 1998년 10월 14일~10월 15일(2일간) 오전 10시

○출석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출석이유 :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

【서울특별시】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(3)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사장,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소속 공무원

【서울특별시교육청】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소속 공무원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
번호 91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

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 10월 12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